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

의안 번호	8593
----------	------

요구연월일 : 2025. 2. 28.

요 구 자 : 박성준 · 강유정 · 고민정
김남희 · 김병주 · 김성희
김용민 · 노종면 · 모경중
박민규 · 백승아 · 부승찬
서미화 · 안태준 · 양문석
윤건영 · 윤종균 · 이소영
전용기 · 정준호 · 정진욱
조계원 · 추미애 의원
(23인)

주 문

국회의원(윤상현)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자는 준동을 획책하는 자유민주시민회의 대표 김진홍 목사와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등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한 것임.

다. 국회의원 윤상현이 2025년 2월 26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하라’는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위기를 수습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해태하고, 오히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 사회의 자유와 정의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해당할 수 있음.

라. 기자회견에서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는 “국가를 반쪽 내더라도 법관 개인의 정치적 기호에 따른 판결을 강행한다면 현재는 그 존재가치를 잃고 산산조각나게 될 것입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8인 심리 등 탄핵심판 절차를 호도하고, 헌법재판관의 개인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인 양 왜곡하는 발언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한 불복과 폭력적 행위 및 물리적 저항을 공개적으로 암시, 선동하는 발언을 하였음. 또한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구속된 청년들을 전원 석

방하고 불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 행위를 정당화하고 비호하는 등 사법부의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였음.

마. 한국사 강사 전한길은 기자회견에서 “탄핵 인용된다면, 올해가 을사년 이니까 제2의 을사오적이 될 것이고, 역사 속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라며 사실관계도 근거도 없이 허위·비방의 목적을 갖고 헌법 재판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폄훼하였으며 극단적인 발언으로 헌법재판관의 위상과 지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였음. 또한,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 파면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집단적·물리적·폭력적 공격을 암시하며 사법 방해 행위와 재판관 겁박을 노골화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선동하였음.

바. 전한길은 지난 2025년 1월 25일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겁박 발언과 폭동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음. 해당 발언 이후 ‘사제폭탄을 준비중입니다’라며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온라인 댓글까지 등장하며 사회 안정을 실제로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동 발언임이 확인된 바가 있음.

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은 2025년 1월 19일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한 발언을 한 전적이 있음.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의 ‘월담 훈방 발언’은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들을 폭도로 돌변하게 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 7억 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서부지법의 많은 판사들과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투입된 경찰 다수가 중상을 당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은 서부지법의 폭동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또다시 국가기관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극우세력의 대표자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동원하여 폭동사태를 조장하도록 주선하고, 극우세력이 발호하고 준동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음.

자. 이에 국회의원 윤상현은 「국회법」 제24조(선서),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며,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15조(소요),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있는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